

견인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여부



글 장현국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1. 머리말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차로이탈, 차량고장 등으로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자동차제조회사에 연락하여 견인차량을 통해 차량을 끌어올리거나 가까운 정비업체 등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견인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자동차 또는 경운기 등을 통해 견인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참조할 만한 분쟁조정결정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2.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C씨)는 2012.10.04. B손해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이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겸피보험자	주요보장내용
개인용 자동차보험	'12.10.4. ~' 13.10.4.	C씨 (1961년생)	- 대인배상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 - 대인배상 II : 1인당 무한 - 대물배상 :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후유장해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사망자, 망인)는 동생(E씨)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밭(경상남도 OO시 소재)의 경작 관련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생(C씨)의 아들인 조카 D씨가 운전한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하여 해당 밭으로 이동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농로 옆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빠져 이를 인근 거주자의 경운기를 이

용하여 견인하던 중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서, 망인 A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상 대인배상책임의 보상대상인 타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¹⁾

〈당사자 주장〉

신청인(A씨의 유족)은 상기 사망사고는 경사진 농로 옆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인근 거주자의 경운기를 이용하여 견인하던 중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망인이 피보험자동차의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기인한 사망사고에 해당되므로 B손해보험회사는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손해보험회사는 본 건 사망사고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농로 옆으로 빠진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의 과정〉

- 2012.10. 4. : 본 건 보험계약 체결
- 2013. 7.28. : D씨²⁾ (기명피보험자 C씨의 아들)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 옆으로 빠지자 경운기에 끈을 연결하여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조수석 부근에서 자동차를 밀고 있던 A씨(기명피보험자의 형, '56년생)가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 / 보험사고 접수
- 2013.10.15. : 피신청인, 신청인(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 2013.11.12.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3. 위원회의 판단

가. 관련법규 및 약관규정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1. 보상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보험약관 <16.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1) A씨, C씨 및 E씨는 형제지간임. A씨는 경기도 거주자이며, 조카 D씨는 경상남도 거주자임.

2) D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해당

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에 대한 검토

본 건의 쟁점은 견인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망인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당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한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등)하고,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져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 사고는 D씨(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A씨(망인)와 함께 경상남도 OO시에서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돌리다가 운전미숙으로 바위가 경사진 농로에 빠지자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석에 있지는 않았으나³⁾ 자동

차의 시동을 켜두고 기어를 중립상태에 두었다는 점,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⁴⁾에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결국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짐으로써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견인과정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를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망인을 죽게 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2)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인지 여부

위원회는, 피보험자가 농로 자체가 경사져 있어 이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마을 주민의 경운기로 견인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견인업체를 부르지 않았으며, 피보험자동차와 경운기를 연결한 끈이 넓이 5cm, 두께 1mm로 매우 얇아서 견인중 끊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망인과 함께 시동이 켜진 피보험자동차를 밀다가 끈이 끊어져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망인이 바위에 깔려 사망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본 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4. 맺음말

통상 견인업자의 견인자동차를 통해 피보험자동차를 견인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견인업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고의 또는 과실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견인업자가 직접 배상하거나 또는 견인업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번 분쟁조정결정은 견인중 발생한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한 경운기 운전자는 사고발생에 대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망인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보험회사가 망인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경운기 운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피보험자(D씨)는 사고당시 운전석 부근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밀고 있었음

4) 망인 A씨가 마을주민인 경운기 운전자에게 견인을 요청하자 경운기 운전자는 견인업체를 부르라고 하였으나, 재차 망인 A씨가 요청하자 경운기로 견인을 하게 된 것임